

국산목재 · 국산목재제품 확인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	
		14일		
신청인	법인명(상호)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	
	주소(소재지)		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	
	전화번호	전자우편		
신청내용	국산목재	소유구분 []국유림 []공유림 []사유림	수종(樹種)	
		수확량(m ³)	수확일자 년 월 일	
		법인명(상호)	목재생산업 등록번호	
		수확지역(소재지)		
	국산목재 제품	제품종류 []제재목 []방부목재 []난연목재 []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[]집성재 []합판 []파티클보드 []섬유판 []배향성 스트랜드 보드 []목질바닥재 []목재펠릿 []목재칩 []목재브리켓 []숯(성형숯 포함) []목재가공제품	제품명(상품명)	생산수량(m ³)
		법인명(상호)	생산일자 년 월 일	
		목재생산업 등록번호	전화번호	
		주소(소재지)		
		인증정보 []목재제품 규격·품질검사 []한국산업표준 []목재제품 신기술 []한국산림인증(FM) []한국산림인증(CoC) []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		
	구매정보	제품명(상품명)	구매수량(m ³)	
		법인명(상호명)	구매일자 년 월 일	
주소(소재지)		전화번호		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첨부서류	1. 국산목재 가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(國有林)에서 수확된 목재: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매각된 국유임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(公有林)에서 수확된 목재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6조에 따라 매각된 공유임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유림(私有林)에서 수확된 목재: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국산목재제품 가.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 원료의 구입·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.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·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으로 한정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직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